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교육부 소속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통계청 소속 5급 1명) 및 절충교역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방위사업청 소속 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일부 과장을 본부 정원과 상호이체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며,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현행화 하는 등 현행 지침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디어협력팀장 각”을 “디지털소통팀장 각”으로, “미디어협력팀장은”을 “디지털소통팀장은”으로 한다.

제4조제5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9호를 삭제한다.

1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 중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및 제7호”를 “제6호의3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납품대금 연동제도의 총괄 운영

제13조제2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제37호를 제40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37호) 중 “창업진흥정책관, 벤처혁신정책관”을 “창업정책관, 벤처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지원 및 안내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 중 “제5항제25호부터 제30호”를 “제5항제28호부터 제33호”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9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정책총괄과장”을 “창업정책과장”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4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미디어협력팀장”을 “디지털소통팀장”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4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1월 20일”을 “2025년 1월 20일”로, “2023년 1월 21일”을 “2025년 1월 2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월

20일”을 “2025년 1월 20일”로, “2023년 1월 21일”을 “2025년 1월 2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 제4항 및 별표 6 제2호,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대변인) ① (생 략)	제2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u>미디어협력팀장</u>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u>미디어협력팀장</u> 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u>디지털소통팀장</u> 각 ----- ----- ----- ----- <u>디지털소통팀장</u> 은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생 략)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 평가에 관한 사항</u>
<u>16.</u> (생 략)	<u>17.</u> (현행 제16호와 같음)
⑥ 재정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직무성과계약제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u> 10. (생략) ⑦ ~ ⑨ (생략)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② (생략) ③ 소상공인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및 제7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⑫ (생략) ⑬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u><신설></u> <u>10. ~ 14. (생략)</u> ⑭ (생략)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생략) ②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정책과, 성장지원과, 창	<u><삭제></u> 10.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제6호의3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 ④ ~ ⑫ (현행과 같음) ⑬ ----- -----. 1. ~ 9. (현행과 같음) <u>10. 납품대금 연동제도의 총괄 운영</u> <u>11. ~ 15. (현행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u> ⑭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업벤처과 및 소상공인과를 두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역정책과 및 지역혁신과를 두되, 각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1. ~ 4. (생략)

5. 그 밖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의 각 과장: 행정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단서
신설>

③・④ (생략)

⑤ 1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고, 2급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창업벤처과장은 광주광역시 및 전

_____.

1. ~ 4. (현행과 같음)

5. -----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라남도 내의 다음 각 호의 사항
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제28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시험·분석
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1. ~ 37. (생략)

37. 그 밖에 중소기업부의
지역기업정책관, 창업진흥정
책관, 벤처혁신정책관 및 기술
혁신정책관 소관 업무 중 다
른 과에 분장되지 않은 사항

38. · 39. (생략)

⑥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13. · 14. (생략)

제14조(사무소) ① · ② (생략)

③ 사무소장은 제13조제3항부
터 제6항(제5항제25호부터 제30
호까지는 제외한다)까지의 업무
를 분장한다.

④ (생략)

-----.

1. ~ 37. (현행과 같음)

40. -----
----- 창업정책관,
벤처정책관 -----

38. · 39. (현행과 같음)

⑥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지원 및 안내에 관한 사
항

14. · 15. (현행 제13호 및 제14
호와 같음)

제14조(사무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5항제28호부터 제33
호 -----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한시정원) ①·② 삭제
 ③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④ 절충교역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방위사업청 소속 공

제20조(한시정원)

<삭 제>

<삭 제>

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기업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⑥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미래산업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⑤ -----

2025년 2월 28일-----

-----.

⑥ (현행과 같음)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9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래산업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u>정책총괄과장</u>이 분장한다.	----- ----- ----- --- <u>창업정책과장</u>-----.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4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4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u>미디어협력팀장</u>이 분장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분장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디지털소통팀장</u>-----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4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4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4호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는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정원을 포함한 별표 4의 정원 12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8명,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3명, 운전서기 1명)은 2023년 1월 2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2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세무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3명, 운전

2025년 1월 20일

2025년 1월 21일

②

2025년 1월 20일

2025년 1월 21일

③・④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표

[별표 9]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2. 제20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2. 제20조 제3항 관 련 한시정 원(존속기 한: 2023 년 2월 28 일)	<삭 제>	-2. 제20 조제3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3 년 2월 2 8일)
총계	1	<삭 제>	-1
일반직 계	1	<삭 제>	-1
5급 이하	1	<삭 제>	-1

3. <u>제20조제4항</u> 관련 <u>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u> 총계 일반직 계 5급 이하 4. <u>제20조제5항</u> 관련 <u>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2월 28일)</u> · ·	<u>3. 제20조</u> <u>제4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3</u> <u>년 2월 28</u> <u>일)</u> 1 1 1 <u>4. 제20조</u> <u>제5항 관</u> <u>련 한시정</u> <u>원(존속기</u> <u>한: 2023</u> <u>년 2월 28</u> <u>일)</u> · ·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u>4. 제20조</u> <u>제5항 관</u> <u>련 한시</u> <u>정원(존</u> <u>속기한: 2</u> <u>025년 2</u> <u>월 28일)</u> · ·	-3. 제20 조제4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3 년 2월 2 8일) -1 -1 -1
--	---	---	--